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3호서식(갑)]

# 피 의 자 신 문 조 서

피의자

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

. . . 에서

특별사법경찰관 는(은)

특별사법경찰리 를(을)

참여하게 하고,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.

| | |
|---|---|
| 문<br>답 | 피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주거,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.<br>성명은 ( )<br>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<br>주거는<br>등록기준지는<br>직장 주소는<br>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<br>직장 전화 전자우편<br>(e-mail)<br>입니다. |

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3호서식(을)]

#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

1.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3.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4.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

답

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

답

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

답

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